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8202 발의연월일: 2022. 11. 10.

발 의 자: 강대식 · 배준영 · 이명수

서범수 · 김학용 · 송언석

서일준 • 유경준 • 김정재

장동혁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행정중심 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라 한다)에 산학연 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대학·연구기관이 교사·지원시설 등을 공동으로이용할 수 있는 공동캠퍼스를 조성·운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이러한 공동캠퍼스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공익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공동캠퍼스는 정부의 국정과제와 세종특별자치시 지역공약사항에 따라 2024년 3월 개교를 목표로사업이 추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익법인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가 미비하여 공익법인 설립이 지연되고, 이는 공동캠퍼스 입주대학의개교 지연으로 이어져 행복도시의 성장 및 도시 활성화에 걸림돌이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공동캠퍼스 운영법인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공동캠퍼스의 성공적인 건립·운영을 담보하고 행복도시의 지속가능한 성장 여건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63조의9제6항·제7항 신설등).

법률 제 호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의9제6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8항부터 제10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9 항(종전의 제7항)제2호 중 "제6항"을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 항(종전의 제8항)제2호 중 "제7항"을 "제9항"으로 한다.

- ⑥ 공익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달한다.
- 1. 국가 또는 국가 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 2. 기관·단체·개인·법인 등의 기부금 또는 후원금
- 3. 자산운영과 관련된 이자수익금
- 4. 공익법인의 사업 수익금
- 5. 그 밖의 수익금
- ⑦ 건설청장은 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3조의10 중 "제63조의9제8항"을 "제63조의9제10항"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3조의9(공동캠퍼스 조성 및	제63조의9(공동캠퍼스 조성 및
운영 등) ① ~ ⑤ (생 략)	운영 등) ① ~ ⑤ (현행과 같
	<u>수</u>)
<u><신 설></u>	⑥ 공익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
	여 필요한 자금을 다음 각 호
	의 재원으로 조달한다.
	1. 국가 또는 국가 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2. 기관・단체・개인・법인 등
	의 기부금 또는 후원금
	3. 자산운영과 관련된 이자수익
	<u>금</u>
	4. 공익법인의 사업 수익금
	<u>5. 그 밖의 수익금</u>
<u><신 설></u>	⑦ 건설청장은 공익법인의 설
	립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
	<u>다.</u>
<u>⑥</u> (생 략)	<u>⑧</u> (현행 제6항과 같음)
<u>⑦</u> 건설청장은 입주기관이 다	9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	

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 1. (생략)
- 2. <u>제6항</u>에 따른 명령이나 검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 ⑧ 건설청장은 입주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항에 따른 입주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주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생략)
- 2. <u>제7항</u>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 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63조의10(청문) 건설청장은 <u>제6</u> 저 <u>3조의9제8항</u>에 따른 입주승인 취소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현행과 같음)
2. 제8항
(I)

,
·
1. (현행과 같음)
2. 제9항
2. <u>/115 8</u>
세63조의10(청문)제6
<u>3조의9제10항</u>